

| | | |
|---|---|---|
| <p>Issue No. 2020-01 January 2020</p> | <p>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p> |  |
|---|---|---|

유럽인권재판소 개요 및 판례

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1959년 설립된 국제재판소로 유럽인권조약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명시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위반에 대한 개인 및 국가의 청원에 대한 판결을 제시한다.

유럽인권조약은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47개 회원국의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준한 국제조약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잔인한 행위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949년 여름 유럽평의회에서 조약을 완성했고, 1953년 9월 조약은 완전히 효력을 갖게 된다. 생명권, 공정한 재판의 권리, 가정생활 및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재산의 보호 등을 보장하고, 고문, 비인간적 대우나 처벌, 노예제도 및 강제노역, 사형제, 자의적 구금, 조약에 명시된 권리 및 자유의 차별적 적용을 금지한다.

유럽인권조약이 발효되면서 1959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을 비준한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판례법은 유럽 여러 국가들의 법과 실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20년 1월 14일 러시아 군인의 어머니가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다 (Styazhkova v. Russia). 2002년 여름 체첸공화국의 보르조이에서 군복무 중이던 청구인의 아들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러시아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고, 이후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상관의 폭행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의 어머니인 류보프 스타즈코바 (Lyubov Styazhkova)는 유럽인권조약 제2조 (생명권), 제3조 (비인간적, 모멸적 대우의 금지), 제13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근거로 아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와 그로 인한 사망,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청구인의 아들의 사망에 대한 조사를 비판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자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당국이 자살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인권조약 제2조 (생명권)의 위반은 없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청구인의 아들에게 폭행을 가한 상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폭행에 가담한 이등병에 대한 조사만 진행되었고 이마저도 사면법을 근거로 중단되었음에 주목했다. 이러한 점에서 제2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상관과 이등병이 청구인의 아들이 사망하기 두 시간 전에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제3조 (비인간적, 모멸적 대우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 정부가 청구인에게 비금전적 손해에 대해 33,800 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2,620.50유로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http://www.echr.coe.int/Pages/home.aspx>

| 인권 NGO 소식 | 유엔 소식 |
|---|--|
| <p>휴먼라이츠워치, 2020년 세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표시</p> <p>휴먼라이츠워치는 1월 14일 2020년 세계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보고서로 올해 30번째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2020년 보고서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11월까지 발생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p> <p>휴먼라이츠워치는 2020년 보고서에서 한국이 전반적으로 언론과 시민사회의 자유가 존중되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성, 성소수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다.</p> <p>보고서는 여성의 권리와 관련해서 2019년 미투운동에 따른 정치인과 연예인의 처벌을 언급했다. 또한 현행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보고 관련법의 개정을 명령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여성의 교육수준, 여성 기업임원의 수, 여성 의원의 수를 반영한 이코노미스트지의 유리천장지수(Glass Ceiling Index)에서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p> <p>또한 성소수자 인권옹호 운동이 힘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 단체 등의 거센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난민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소수의 아시아 국가들 중 하나이지만,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비율은 매우 낮음을 언급했다.</p> <p>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가 제시한 권고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Law)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https://www.hrw.org/world-report/2020/country-chapters/south-korea</p> | <p>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획기적 판결, 기후변화 난민 가능성 인정</p> <p>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기후변화 난민 신청과 관련한 최초의 판결에서 생명권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상황으로 인한 개인의 난민신청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p> <p>뉴질랜드에 망명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키리바시인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키리바시(Kiribati)의 해수면 상승과 그 밖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거주가능한 지역이 희소해지면서 토지분쟁이 발생하고 환경파괴로 인해 농업이 어려워지고 해수로 인한 수자원 오염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p> <p>해당 진정에 대해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뉴질랜드 법원이 관련 증거의 철저한 검토 후 충분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판결을 내렸음을 인정하면서 생명권의 위반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p> <p>하지만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향후 기후변화 난민 신청이 인정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 난민자격을 신청하는 개인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즉각적인 위협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홍수와 같은 급작스러운 사건이나 해수면 상승과 같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는 사건 모두 개인의 난민신청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p> <p>위원회는 또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력한 국가나 국제 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송출국이 겪는 기후변화의 피해는 수용국이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p> <p>이번 판결은 유엔 인권조약기구가 기후변화 난민신청자의 진정에 대해 내린 최초의 판결이다.</p> <p>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482&LangID=E</p> |

| 기 획 특 집 | 행 사 일 정 | | | | | | | | | | | | | | |
|---|--|----|----|---------|--------------------------|-----------|-------------------|-----------|-------------------------------|-----------|----------------|-----------|------------------------|-----------|-------------------|
| <p>분쟁상황에서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학교 선언’ 101개국의 지지 얻어</p> <p>학생, 교사, 교육기관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교육 인프라의 군사적 이용은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15년 노르웨이와 아르헨티나의 주도로 유엔 회원국들은 ‘안전한 학교 선언’을 작성했다. 이는 분쟁상황에서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유일한 국제협약이다.</p> <p>‘안전한 학교 선언’은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학교의 보호를 강화하고 군사적 목적의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간 정치적 협약이다. 2015년 5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1차 안전한 학교에 관한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afe Schools)에서 각국의 승인을 위해 공개되었다.</p> <p>2017년 3월 제2차 회의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어 무장분쟁 상황에서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p> <p>2020년 1월 기준 전 세계 101개 국가가 본 선언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유엔 내부에서는 안토니오 구테레스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버지니아 감바 (Virginia Gamba) 아동 및 무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등이 회원국들의 선언 지지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은 아직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다.</p> <p>‘안전한 학교 선언’은 민간기관인 학교의 성격을 존중하고 무장분쟁 상황에서 학교를 보호하는 우수사례를 개발,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군과 비정부무장단체들의 교육기관의 군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공격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공격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p> <p>http://ssd.protectingeducation.org/</p> | <p>2020년 2월 유엔 주요회의 일정</p> <table border="1" data-bbox="817 701 1332 1238"> <thead> <tr> <th>날짜</th> <th>회의</th> </tr> </thead> <tbody> <tr> <td>2/4-2/7</td> <td>여성차별철폐위원회 진정실무그룹 제46차 회기</td> </tr> <tr> <td>2/10-2/28</td> <td>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75차 회기</td> </tr> <tr> <td>2/10-2/14</td> <td>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제120차 회기</td> </tr> <tr> <td>2/10-2/14</td> <td>진정실무그룹 제26차 회기</td> </tr> <tr> <td>2/10-2/14</td> <td>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실무그룹 제85차 회기</td> </tr> <tr> <td>2/10-2/14</td> <td>고문방지 소위원회 제40차 회기</td> </tr> </tbody> </table> <div data-bbox="817 1294 1332 165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국제 인권 동향</p> <p>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p> </div> | 날짜 | 회의 | 2/4-2/7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진정실무그룹 제46차 회기 | 2/10-2/28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75차 회기 | 2/10-2/14 |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제120차 회기 | 2/10-2/14 | 진정실무그룹 제26차 회기 | 2/10-2/14 |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실무그룹 제85차 회기 | 2/10-2/14 | 고문방지 소위원회 제40차 회기 |
| 날짜 | 회의 | | | | | | | | | | | | | | |
| 2/4-2/7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진정실무그룹 제46차 회기 | | | | | | | | | | | | | | |
| 2/10-2/28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75차 회기 | | | | | | | | | | | | | | |
| 2/10-2/14 |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제120차 회기 | | | | | | | | | | | | | | |
| 2/10-2/14 | 진정실무그룹 제26차 회기 | | | | | | | | | | | | | | |
| 2/10-2/14 |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실무그룹 제85차 회기 | | | | | | | | | | | | | | |
| 2/10-2/14 | 고문방지 소위원회 제40차 회기 | | | | | | | | | | | | | | |